

4.3.16 MR(의약정보담당자)자격인정에관한규정

제정 2005. 05. 16.

개정 2010. 10. 21.

개정 2014. 11. 03.

개정 2018. 02. 28.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의약분업과 제약산업의 발전 등 변화하는 의약산업 환경에서 의약품의 영업활동 및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과 보급을 위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에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 유효성 등 의약품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담당하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자격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의약정보담당자(MR, Medical Representative)자격을 말하며 이하 “MR”이라 칭한다.

제3조(응시자격) MR자격은 다음의 과목을 이수한자에게 부여한다.

1. 약제학
2. 약리학
3. 의약개론
4. 질병과 치료
5. 보건의료관계법규 또는 약사관계법규 중 택1
6. 해부생리학
7. 의약마케팅 또는 제약마케팅 중 택1 <개정 2018.02.28>
8. 의학용어 <개정 2010.10.21>

제4조(자격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MR자격시험의 과목은 질병과 치료, 약제학 및 약전, 약리학, 의약개론, 영업 및 마케팅으로 하며, 합격기준은 전 과목 100점 만점 총점평균 60점 이상,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자에게 자격을 인정하고 총장이 별지1의 양식에 의거 MR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14.11.03>

제5조(자격시험의 시행과 공고) ① MR자격시험은 매년 2회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자격시험 일시, 시험장소 및 응시원서 제출기간, 기타 시험의 실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험실시 30일전 까지 공고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신설 2014.11.03〉

Chodang University

Medical Representative

제 00 호

M R 자격증

의약정보담당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

의약관리학과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위의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초당대학교총장